##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학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387 발의연월일: 2025. 2. 24.

발 의 자:이학영·김교흥·정준호

문금주 • 문정복 • 이정문

안호영 · 강득구 · 임호선

김성환 · 김영배 의원

(11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대통령의 사면·감형 또는 복권에 관한 권한을 규정하고 있음. 하지만 최근 윤석열 정부의 불법 계엄선포와 내란 사태로 헌법의 존립을 해치는 중대 범죄행위가 발생하는 등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가 되풀이되고 있으며, 이에 따라 내란 행위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강조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. 또한 이같은 죄에 대한 사면권 행사는 국민적 법 감정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, 헌법과 법률을 통해 정한 형벌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.

이에 「형법」과 「군형법」에서 규정한 내란과 외환, 반란의 죄를 저지른 자는 사면·감형 및 복권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고자 함(안 제3조).

법률 제 호

##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

사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「형법」 제2편제1장, 제2장 및 「군형법」 제2편제1장의 죄를 범한 자는 예외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사면 등의 대상) 사면, 감	제3조(사면 등의 대상)
형 및 복권의 대상은 다음 각	
호와 같다. <u>&lt;단서 신설&gt;</u>	<u>다만, 「형법」 제2편</u>
	<u>제1장, 제2장 및 「군형법」 제</u>
	2편제1장의 죄를 범한 자는 예
	<u>외로 한다.</u>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